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인사규정

제정 2001. 7. 2

개정 2012. 12. 20

개정 2017. 7.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계약직직원(이하 "계약직" 이라 한다)의 채용조건·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직의 임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 단시간·단기간근로자, 감시단속적근로자 등의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후단신설 2017. 7. 18].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적용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해업무 주관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계약직" 이라 함은 공단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 공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채용구분) ① 계약직의 채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 또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자격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직은 근무기간중 담당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채용자격) 공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고용승계 인력에 대하여는 채용자격 기준과 별도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6조(채용방법) 이사장이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과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8조(채용기간) ① 계약직은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채용계약의 해지) 이사장은 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담당업무를 할 수 없을 때.
6. 채용구비서류의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때.
7. 기타 공단규정이나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10조(근무실적평가) 이사장은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인사규정 제37조에 의거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등) ①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단체규정 및 시행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채용계약에 따라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직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수) ① 계약직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연봉계약은 채용자격과 경력을 감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계약직의 보수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13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7.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2. 12. 20.>

계약직직원 채용자격기준

등급	자 격 기 준
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6. 5급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위 가급부터 라급까지에서 규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사람